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404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추경호의원안, 박대출의원안)	2

I. 개요

1.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40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추경호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8. 27.

(3) 회 부 일 : 2025. 8.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이 신성장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 예정임.

그러나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함.

이에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3호).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추경호의원안, 박대출의원안)

현행	개정안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통합투자세액공제 - 유형별 공제율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tr><td>일반</td><td>1</td><td>5, 7.5¹⁾</td><td>10</td><td rowspan="4">10</td></tr><tr><td>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td><td>3</td><td>6, 9²⁾</td><td>12</td></tr><tr><td>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td><td>15</td><td>15, 20³⁾</td><td>25</td></tr><tr><td>반도체 분야</td><td>20</td><td>20, 25⁴⁾</td><td>30</td></tr></table>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 (~3년)7.5%, (4년~)5% 2) (~3년)9%, (4년~)6% 3) (~3년)20%, (4년~)15% 4) (~3년)25%, (4년~)20% ○ 임시투자세액공제 - 공제율(2025년도 투자분):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tr><td>일반</td><td>1</td><td>7</td><td>12</td><td rowspan="4">10</td></tr><tr><td>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td><td>3</td><td>8</td><td>14</td></tr><tr><td>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td><td>15</td><td>15, 20¹⁾</td><td>25</td></tr><tr><td>반도체 분야</td><td>20</td><td>20, 25²⁾</td><td>30</td></tr></table>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 (~3년)20%, (4년~)15% 2) (~3년)25%, (4년~)20% - 적용기한: 2025. 12. 31.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7.5 ¹⁾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²⁾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³⁾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⁴⁾	30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반	1	7	12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8	14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¹⁾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²⁾	30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통합투자세액공제 - 유형별 공제율: (현행과 같음) ○ 임시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6. 12. 31. (추경호의원안),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7.5 ¹⁾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²⁾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³⁾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⁴⁾	30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반	1	7	12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8	14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¹⁾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²⁾	30																																																

현 행	개정안
	<u>2028. 12. 31. (박대출의원안)</u> ○ 시행일: 2026. 1. 1. (추경호의원안, 박대출의원안)

* 추경호의원안 2025. 8. 27. 발의(의안번호 12404), 박대출의원안 2025. 9. 9. 발의(의안번호 12811)

□ 개정안은 상향된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추경호의원안은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박대출의원안은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루어진 투자에 한하여 상향조정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2025년 투자분의 경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비 2%p 높은 공제율이 적용됨.

[일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2025년) 공제율 비교]

(단위: %)

구 분	기본공제			추가 공제
	대	중견	중소	
일 반	1	<u>5 → 7</u>	<u>10 → 12</u>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u>6 → 8</u>	<u>12 → 14</u>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25	
반도체 분야	20		30	

주1: 화살표로 변경된 공제율이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임

주2: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종료 후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점감구조는 미반영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3년에 한시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 3월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그리고 정부는 2024년 1월에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는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4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는 정책과제가 포함되었지만 2024년 세법개정 당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았음.

이후 2025년 3월 세법개정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였음.

-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1982년을 시작으로 여섯 차례 도입된 바 있으며, 3차 도입 시 7회 연장, 4차 도입 시 4회 연장, 5차 도입시 12회 연장, 6차 도입 시 1회 연장이 이루어졌음.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시행 연혁]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82년 (1년)	85.6~86년 (1년반)	89.7~94년 (5년반)	97.6~00.6 (3년)	01~10년 (10년)	23~25년 (2년)
		7회 연장	4회 연장	12회 연장	1회 연장

- 개정안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경제여건 악화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래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2023년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던 2024년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24년에도 연장될 경우 일반적 자산에 대하여 40.0%가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증가 계획금액은 6억 5,222만원, 증가비율은 25.0%로 나타났음.¹⁾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투자를 조기에 늘리도록 2023년에 한해 투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예외적으로 2025년 말까지 연장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1) 기획재정부,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3) 통합투자세액공제」, 2024. 9.

같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정책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세제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관행적으로 연장할 경우 적용기한의 재연장 기대가 형성될 우려가 있고, 이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실효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과거에도 5차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1년에 도입된 후, 상시적 연장을 통해 2010년까지 운영되어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된 사례가 있음.

둘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09년 도입되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고용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로 통계적 유의성이 약한 소폭의 증가 또는 변화가 관측되었음.²⁾

셋째, 2024년 세법개정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따른 투자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2) 이철인, ‘한국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국제경제연구」, 2020.6.